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- 24호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「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」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타 자치구의회 예산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연구회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 순서 변경 및 조 번호 조정 (안 제4조, 제6조, 제10조 ~ 제17조까지)

나. 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5조)

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7조)

라. 연구회 회의, 수당 규정 신설 (안 제8조 ~ 제9조)

마. 연구회 예산지원 범위 조정 (안 제10조)

바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서 신설(안 제14조)

사. 조문 순서 변경 등에 따른 수정 (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7호서식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tnk10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